

대법원 2016. 4. 12 선고 2015다256480 판결 [소유권말소등기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6. 4. 12 선고 2015다256480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15. 12. 2 선고 2015나2028348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5. 14 선고 2014가합106442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2. 선고 2015나2028348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6.4.12.

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